

#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

2020. 2.

금 융 위 원 회

1

**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(미래에셋생명)**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보험과		금감원 보험감리국	
미래에셋생명	오은상 이사 (02-3271-4090)	김동환 과장	02-2100-2960	오정근 팀장	02-3145-8230
		현지은 사무관	02-2100-2962	김영석 선임	02-3145-8225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%\*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(보험금 3만원(1일), 6개월 만기, 재가입형)

\* 보험사고 미발생이 확인된 계약자의 경우, 이익의 100%를 환급



- (특례 내용) 보험업감독규정 제6-13조 제1항

-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, 유배당보험이익은 주주지분을 10% 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

→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에 한정하여 90% 이상 환급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률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개발 허용

- (심사결과)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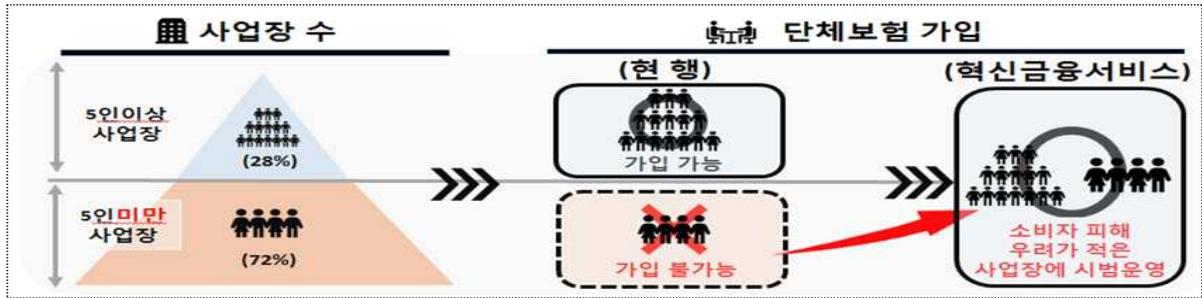
- (기대 효과) 보험료 사후 정산에 따른 무사고 보상, 낮은 사업비 (보험료의 10%)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 등 소비자 효익은 증대 되고 보험회사 이익은 제한

-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현황,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의 공개로 보험상품의 투명성 제고

- (향후일정) '20년 7월 서비스 출시 예정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보험과		금감원 보험감독국	
삼성생명	황두순 프로 (02-772-6958)	김동환 과장	02-2100-2960	박동원 팀장	02-3145-8231
		현지은 사무관	02-2100-2962	박경진 조사역	02-3145-8233

□ (서비스 주요내용)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단체보험 운영



□ (특례 내용) 보험업감독규정 제7-49조 제2호

-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,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
-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보험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통한 동의를 수령할 것
- 근로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안내자료 사본을 동일하게 교부
- 업무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근로자 유족으로 지정하고, 그 외 사망보험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로 근로자 유족 확인서를 징구

□ (기대 효과)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·사망 등에 대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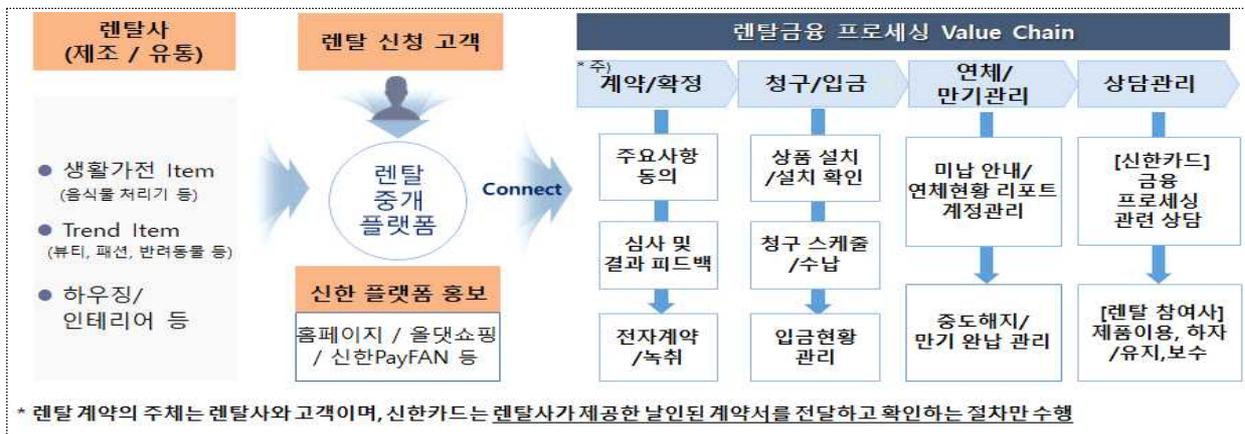
-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

□ (향후일정) '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

##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(신한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중소기업과	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	
신한카드	박민수 팀장 (02-6950-7210)	홍성기 과장	02-2100-2990	이호진 팀장	02-3145-7447
		성미라 사무관	02-2100-2992	박병진 선임	02-3145-7568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,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,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



- (특례 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

-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요청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### ※ 부가조건 주요 내용

-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, 업무 범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
- 합리적인 업무위탁수수료 책정기준 마련 등

- (기대 효과) 카드사가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 제고

- 또한, 중소 렌탈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일부를 카드사가 위탁수행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

- (향후일정) '20년 9월 서비스 출시 예정

# 4

##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(KB국민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중소기업과	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	
KB국민카드	김범일 팀장 (02-6936-3374)	홍성기 과장	02-2100-2990	이창규 팀장	02-3145-7440
		성미라 사무관	02-2100-2992	이기원 선임	02-3145-7569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(에스크로) 기능을 추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



- (특례 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, 제18조의3, 제19조
  -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부가조건 주요 내용

-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유통 방지 방안 마련
- 수수료 등 이용가격 고지, 일시불 외 거래에 대한 이자율 안내 등

- (기대 효과)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

- (향후일정) '20년 8월 서비스 출시 예정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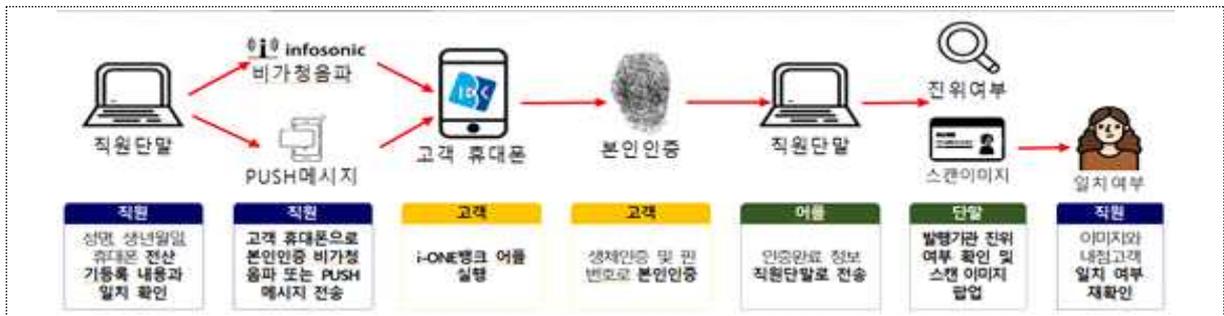
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(중소기업은행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은행과		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	
중소기업은행	윤명진 차장 (02-2031-3440)	유영준 과장	02-2100-2950	최인호 실장	02-3145-7500
		강련호 사무관	02-2100-2986	손성기 선임	02-3145-7504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기존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시, ① 은행 앱(app)을 통한 본인인증\*, ② 既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\*\*,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

\* 기존고객이 과거 거래시 입력한 생체인증 또는 6자리 PIN번호 입력

\*\* 은행이 보관중인 신분증이 재발급 등으로 현재 유효한 신분증이 아닐 경우 '불일치'



- (특례 내용)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

-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,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(실명확인증표)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하나, →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신분증 실물과 은행이 보관 중인 신분증 사본의 사진 대조시,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
- 소비자 보호방안(분쟁해결방안, 배상방안 등),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,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결과 제출

- (기대 효과) 은행 창구를 통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, 편의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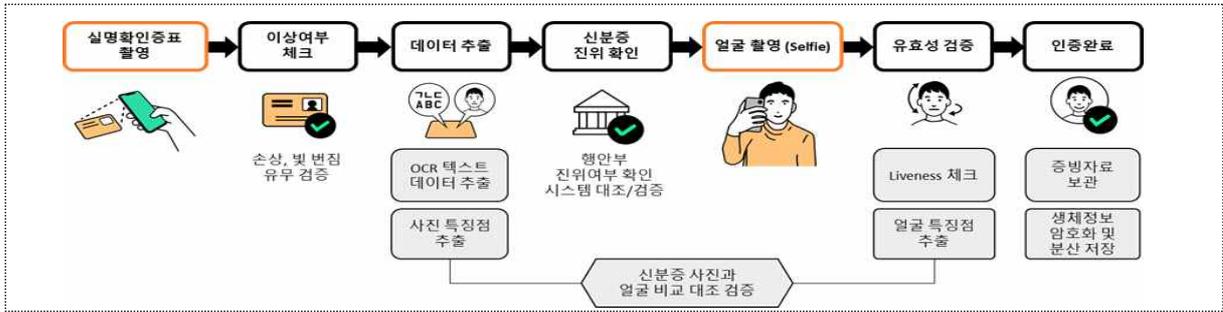
- (향후일정) '20년 8월 서비스 출시 예정

6.7

**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**  
**[한화투자증권, KB증권]**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은행과		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	
한화투자증권	김희연 과장 (02-3772-7530)	유영준 과장	02-2100-2950	최인호 실장	02-3145-7500
KB증권	전일교 과장 (02-6114-1513)	강련호 사무관	02-2100-2986	손성기 선임	02-3145-7504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,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



- (특례 내용)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등

○ 비대면 금융거래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\*\*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

\*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

→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(영상통화를 대체)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위·변조 여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
- 실명확인 증빙자료(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 포함) 및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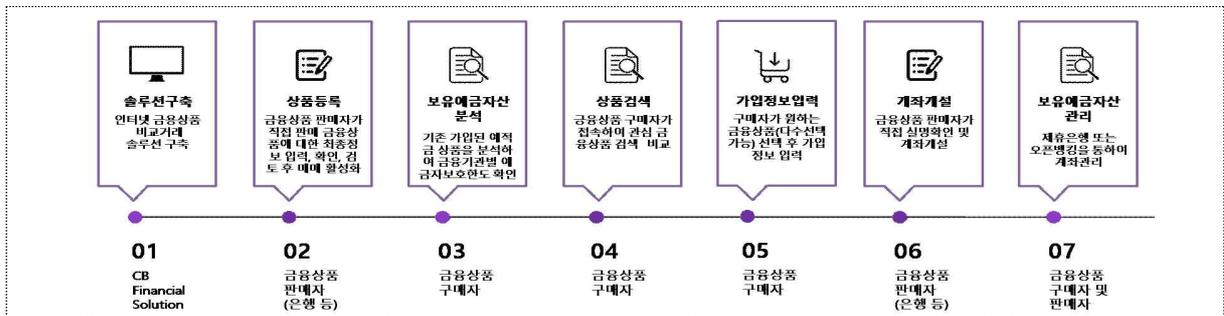
- (기대 효과)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(예: 고령층) 및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가능

- (향후일정) '20년 7월(한화투자증권)·8월(KB증권) 서비스 출시 예정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은행과		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	
(주)씨비파이 낸셜솔루션	최혜윤 대표 (02-719-1981)	유영준 과장	02-2100-2950	최인호 실장	02-3145-7500
		강련호 사무관	02-2100-2986	손성기 선임	02-3145-7504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금융회사(저축은행 등) 정기예금 비교플랫폼\*을 통해,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(5천만원) 내에서 정기 예·적금 상품을 추천

\* (고객) 조회한 상품 중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추가정보(고객식별정보, 가입금액 등) 입력 (신청인)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신청정보(고객식별정보, 가입상품, 가입금액 등) 전달



- (특례 내용)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

-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,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

→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·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범위는 제휴된 금융회사의 예·적금 상품 추천으로 제한하고, 추천 완료 즉시 당해 금융거래정보 삭제
- 20영업일 내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,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며,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결과 제출

- (기대 효과) 고객의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한도 정보를 활용하여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·적금 상품에 분산예치 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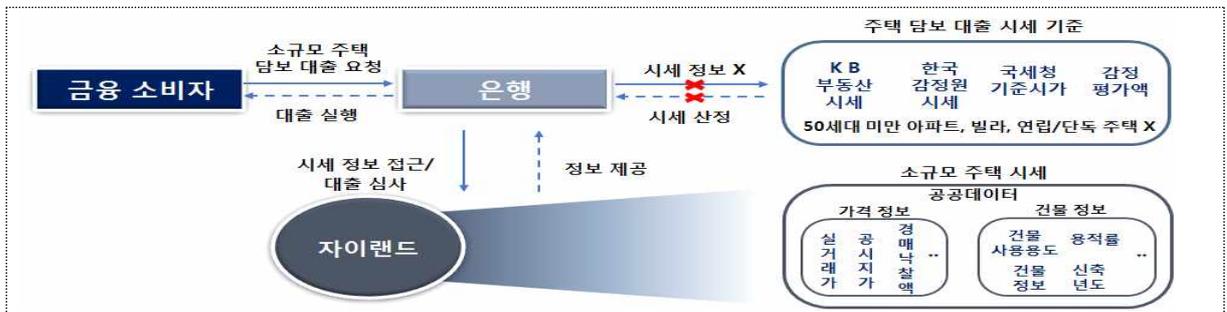
- (향후일정) '20년 8월 서비스 출시 예정

9

빅데이터 · 시 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[자이랜드]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은행과		금감원 은행감독국	
자이랜드(주)	조재식 팀장 (010-7125-0470)	유영준 과장	02-2100-2950	이준수 국장	02-3145-8020
		강련호 사무관	02-2100-2986	김병준 수석	02-3145-8043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공시지가,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를 기초로 빅데이터·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,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


- (특례 내용)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의2, 별표18
  -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\*만 적용 가능
    - \* ①국세청의 기준시가, ②감정평가액,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, ④KB부동산시세
  -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1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1년 경과 이후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적절한 주택가격을 산출·제공하였는지 검증한 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연장
- 공개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세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 형식으로 은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

- (기대 효과) 그간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주택(50세대 미만 아파트, 단독주택 등)에 대해 실시간 시세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

\* 시세 평가 소요시간 : (외부 감정평가) 1~3 영업일 → (신청 서비스) 10초 이내

- (향후일정) '20년 6월 서비스 출시 예정